○○○씨 ○○○파종회 정관

제 1 장 : 총 칙

제 1 조(명칭) 본원의 명칭은 ○○○씨 ○○○파 종약원이라 칭한다.

제 2 조(소재) 본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○○○구 ○○동 123번지에 둔다.

제 3 조(목적) 본원은 ○○선조의 만고에 빛나는 유덕을 추모 선양하고 종족의 화목번 영과 종가보호 및 후진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(사업)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○○선조 유덕선양과 그의 유관한 사업
- ② 종중재산의 보존과 그 효율적 관리 운영
- ③ 육영문화사업
- ④ 부동산 임대사업
- ⑤ 본원의 자산은 제3조의 목적사업 외에는 투자할 수 없고 회원 또는 회원집단 에 분배할 수 없다.

제 2 장 : 회 원

제 5 조(구성) 본원의 회원은 ○○○씨 ○○공의 자손으로 구성한다.

제 6 조(권리 및 의무)

-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.
- ② 회원은 본원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종중 공동부담의 의무가 있다.

제 3 장 : 임 원

제 7 조(임원)

① 본원에 다음 임원을 둔다.

이사장:1인, 부이사장:5인, 이사:31인(중 상임이사 1인)

감사 : 3인(중 상임감사 1인)

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이사회 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.

제8조(임원의 임기 및 보선)

-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-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장, 부이사장, 감사는 총회에서, 이사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③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제 9 조(임원의 임무)

- ① 이사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통리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, 이사장 유고시는 부이사장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순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대리한다.
-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에 의하여 원무를 처리 관장한다.
-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⑤ 감사는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, 경리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0조(명예원장 및 고문)

- ① 종손은 본원의 명예원장으로 추대한다.
- ② 고문은 약간명의 종중 원로로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.
- ③ 고문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에 응한다.
- ④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
제 4 장 : 총 회

제11조(총회의 구성) 본원의 총회는 각 파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중앙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- ① 대의원은 각 파에서 100명 이내 중앙에서 50명 이내로 선출한다.
- ② 각 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은 각 파의 세대수 비율에 의하여 정하고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대의원선출요강에 의한다.
- ③ 중앙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은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단에서 선출한다.
- ④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
제12조(총회종별 및 절차) 본원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(음)9월 말일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, 개최 10일 전에 회의목적 및 부의사항과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동으로 의결하다.

제13조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예산,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②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- ③ 임원선출 및 보수에 관한 사항
- ④ 기본재산(부동산)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⑤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
- ⑥ 기타 본원 설립목적에 부수되는 사항

제 5 장:이 사 회

제14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과 이사로서 구성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- ② 재산(동산) 회계, 급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③ 사업계획 및 내규에 관한 사항
- ④ 소청과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

⑤ 종무운영상 필요에 따라 각급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

제 6 장 : 보 칙

제16조(회계년도) 본원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.

제17조(정관개정) 본원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제18조(회의록 서명날인)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대의원 2인 또는 이사 2인으로 서명 날인한다.

제 7 장 : 부 칙

제 1 조 본 정관은 서기 1982년 음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초대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3 조 1994년 4월 30일 개정한 제16조는 1994년 1월 1일로 소급 시행한다.

제 4 조 2001년 4월 26일 개정한 정관은 200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